

의안번호	2215436
의 퇴 인	김성원 의원
회 답 일	2026. 2. 5.
추계번호	25A7185

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의 수립,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및 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 설치,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1,600만원, 2031년 1억 2,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900만원(연평균 1억 4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 (안 제6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(안 제8조)	8	8	8	8	8	40	8
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(안 제10조)	6	6	6	6	6	30	6
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 증(안 제15조)	102	105	108	110	113	539	108
합 계	216	119	122	124	127	709	142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8조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함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실태조사)	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AI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8조(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)	-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-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
4	안 제10조(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)	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1조(기술개발사업의 추진)	-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I 바이오헬스기기등기술개발사업(이하 “기술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-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 -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6	안 제12조(시범사업의 실시)	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AI 바이오헬스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
7	안 제13조(기술개발의 촉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기술의 연구·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4조(기술 분류체계의 확립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기술 관련 정보·인력·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I 바이오헬스기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켜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9	안 제15조(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)	○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(이하 “우수기업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음.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0	안 제20조(조세에 관한 특례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)	○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우수기업의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2	안 제24조(전문인력 양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AI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－ 2. AI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－ 3. AI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된 직무표준의 마련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및 자격제도의 정착 - 4. AI 바이오헬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- 5. 그 밖에 AI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,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
13	안 제25조(표준화의 추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AI 바이오헬스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보급 - 2. AI 바이오헬스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의 표준의 조사·연구개발	재량규정
14	안 제26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AI 바이오헬스기술 및 전문인력의 교류, 관련 해외정보의 수집·제공, 전시회의 개최, 해외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5	안 제27조(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증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 - 2. AI 바이오헬스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절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- 3. AI 바이오헬스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·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- 4. AI 바이오헬스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- 5. 그 밖에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○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지원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
16	안 제28조(홍보·전시·판매·훈련센터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·전시 및 판매와 의료인 대상 AI 바이오헬스 제품 훈련을 위하여 홍보·전시·판매·훈련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7	안 제29조(AI 바이오헬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치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 사업자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AI 바이오헬스 전문생산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립하는 경우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봄 ○ 정부는 연구소가 실시하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(제8항)	재량규정
18	안 제30조(조사 및 관리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·수입·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9	안 제30조의1(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·수입·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AI 바이오헬스 제품에 관한 산업통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·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0	안 제30조의2(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센터 지정·운영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 제품 정보의 수집·조사·가공·이용·제공 및 제30조의1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(이하 “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센터”라고 한다) 하여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○ 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센터의 장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AI 바이오헬스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고·제출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, 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함(제2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통계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	—
2	안 제7조(실태조사)	X	○ 현재 산업통상부는 “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”의 일환으로 “디지털 헬스케어 실태조사”(2026년 예산 1억 5,000만원)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정안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3	안 제8조(AI 바이오헬스산업 위원회)	○	—
4	안 제10조(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)	○	—
5	안 제11조(기술개발사업의 추진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산업통상부 등은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6	안 제12조(시범사업의 실시)	X	
7	안 제13조(기술개발의 촉진)	X	
8	안 제14조(기술 분류체계의 확립)	X	
9	안 제15조(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)	○	—
10	안 제20조(조세에 관한 특례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산업통상부 등은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11	안 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)	X	
12	안 제24조(전문인력 양성)	X	
13	안 제25조(표준화의 추진)	X	
14	안 제26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X	
15	안 제27조(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)	X	
16	안 제28조(홍보·전시·판매·훈련센터 지원)	X	
17	안 제29조(AI 바이오헬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치)	X	
18	안 제30조(조사 및 관리)	X	
19	안 제30조의1(AI 바이오헬스 산업통계정보시스템구축 등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20	안 제30조의2(AI 바이오헬스 산업통계정보센터 지정·운영 등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부·보건복지부 등은 다수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부·보건복지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부·보건복지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4 결산	2025 예산	2026 예산
안 제11조 (기술개발사업의 추진)	바이오산업기술개발 (R&D) (디지털헬스케어)	일반예산 (산업부)	40,654	51,282	55,358
	다기관-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험모델 개발(R&D)	일반예산 (복지부)	—	6,750	9,000
	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R&D)	일반예산 (복지부)	60,361	111,835	123,003
	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(R&D)	일반예산 (복지부)	3,600	4,800	4,800
	K-AI 신약개발 전임상·임상 모델개발(R&D)	일반예산 (복지부)	—	2,184	8,736
안 제24조 (전문인력 양성)	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	일반예산 (산업부)	6,438	3,118	3,024
	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(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)	일반예산 (복지부)	1,034	3,594	6,116
	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(R&D)	일반예산 (복지부)	—	4,500	6,000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4 결산	2025 예산	2026 예산
안 제25조 (표준화의 추진)	국제표준활동지원 (국제표준화 선도정책연구)	일반예산 (산업부)	95	68	100
안 제26조 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해외진출기반구축 (해외진출기업지원)	일반예산 (산업부)	700	600	540
안 제27조 (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)	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(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)	일반예산 (산업부)	461	495	1,133
안 제30조의1 (AI 바이오헬스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)	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사업 (산업통계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·강화)	일반예산 (산업부)	349	255	349
안 제30조의2 (AI 바이오헬스산업 통계정보센터 지정·운영 등)	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사업 (산업통계 콘텐츠 개발/확대)	일반예산 (산업부)	135	99	127

자료: 산업통상부·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안 제10조(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)와 안 제15조(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)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(지식재산처의 직무 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)를 참고하여 추계함

□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6조)

□ 안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로 수립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·지원 시행계획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유사 연구용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억원으로 예상됨

- 유사 사례로는 “미래의료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”(질병관리청, 2023년, 1억 4,700만원), “첨단의료복합단지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”(보건복지부, 2025년, 9,990만원), “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정책 방향”(보건복지부, 2021년, 6,930만원) 등이 있음

[표 3]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6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(안 제8조)

□ 안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두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로 회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, 동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함
-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의 경우 제정안은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□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800만원(8명×25만원×4회)으

로 추계됨

-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정원의 과반인 8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안 제8조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 - － 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
 1. 종합계획의 수립
 2.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
 3.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
 4.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·협력 및 지원
 5.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 6.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표 4] AI 바이오 헬스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(안 제8조)	8	8	8	8	8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AI 바이오 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AI 바이오 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를 두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AI 바이오 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 설치로 회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, 동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함
 - 제정안은 동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 수 등을 추정할 수 없으나, 유사 사례(지식재산처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)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12명으로 가정함
 - － 「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에 따르면, 인증심사위원회는

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¹⁾

- 제정안의 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는 우수기업 인증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, 종합지원센터 지정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정 등을 심의하므로 위원 수를 12명으로 가정함

-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600만원(12명×25만원×2회)으로 추계됨
 -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12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5] 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(안 제10조)	6	6	6	6	6	30	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(안 제15조)

- 안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AI 바이오헬스산업 인증·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등 인증제도를 운영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때 우수기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(안 제31조)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에 수수료 수입을 차감하여 반영하여야 하나,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
- 유사 사례(지식재산처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)를 고려할 때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억 200만

1) 「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 제11조(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우수기업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, 변호사, 교수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억 3,900만원으로 추계됨

- 유사 사례인 지식재산처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운영 관련 예산 (2026년 1억원)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
 - 인건비 4,000만원, 사전준비 2,000만원, 인증심사 운영(심사위원회 개최 등) 3,000만원, 사후검토 1,000만원 등
- 위 예산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고, 인건비 외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여 추계함
 -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7년 이후 각각 3.3%, 2.0%임

[표 6]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인증(안 제15조)	102	105	108	110	113	539	10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